

## 머리말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일본에 와서 취업처를 알선 받아 일하거나, 일본 노동법이나 직장생활 습관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건 등을 둘러싸고 고용주 등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등으로 적절한 급부를 받지 못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충분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여러분이 일본에서 일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이 일본에 오려고 하는 분들은 출발 전에 정성스러운 준비와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팜플렛은 일본에서 일하려고 하거나 또는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이 올바른 취업경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적당한 고용관리하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정당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꼭 이 팜플렛을 일본에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본생활이나 습관에 익숙해지고 윤택한 근로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1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일할 수 없는 외국인

외국인이 취직을 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일본에 입국·재류하는 경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약칭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 (1) 직종, 업종을 막론하고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및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관법상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가 없는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2) 일정한 범위내의 직종, 업종, 근무내용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홍행」, 「기능」의 재류자격과 워킹 홀리데이나 기능실습생 등 법무대신이 지정한 활동에 한하여 취업이 인정되고 있는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각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재류자격의 경우, 당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또는 재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법에서는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 상륙 후 90일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지 시정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거주지의 시정촌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 .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및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 일본 국내에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헬로워크 등에서의 직업소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자격외활동은 본래의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유학」 및 「취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포괄적인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후의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은 원칙으로 이하와 같습니다. 또한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분이라도 풍속영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유학생 · 취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일람표 □■□

		1 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	교육기관의 장기휴업중 아르바이트 시간
유학생	대학 등의 정규생	주 28 시간 이내	1 일 8 시간 이내
	대학 등의 청강생 · 연구생	주 14 시간 이내	
	전문학교 등의 학생	주 28 시간 이내	
취학생		1 일 4 시간 이내	

## 불법취업이 되는 경우

이하의 취업은 불법취업으로서 입관법 위반이 되어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1)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더라도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재류자격에서 인정되는 활동 이외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경우 및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으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 그와 같은 활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2) 불법체재자는 불법체재 그 자체가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 어떠한 노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재류자격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으로 ( → 34 페이지 ) >

## 다른 재류자격에 속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변경합니다 . (※)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별도로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재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것을 받지 않고 수입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입관법 위반이 되며 ,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이 재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은 재류기한 이전에 행할 필요가 있으며 , 재류기간 전이라도 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 신청중의 새로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도 입관법 위반이 됩니다 .

또한 , 재류자격변경 수속은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단 ,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인 분이 신청할 경우에는 부득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재류자격을 변경했을 경우 , 외국인등록법에서는 외국인이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거주지 시정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기재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 거주지의 시정촌 사무소에서 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일본에서 재류할 수 없습니다 . (※)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일본 국내에서 그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재류기간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수속도 재류기한 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일본 국내에 재류하는 것은 입관법 위반이 되며 ,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재류기간을 변경했을 경우 , 재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법에서는 외국인이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거주지 시정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기재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 거주지의 시정촌 사무소에서 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학」에서 「기술」, 「인문지식 · 국제업무」 등의 취업가능한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 중에 대학원 , 대학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에 재학하신 분에 대해서는 , ①재류자격 해당성이 있으며 , ②그 학력 ( 學 歷 ) 등이 각 재류자격에 인정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술」, 「인문지식 · 국제업무」 등의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졸업한 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동일하나 , ① 「전문사 ( 專 門 士 )」의 호칭을 가지며 , ②전수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당해 기준 중 학력에 관련된 요건 ( 대학 졸업 등 ) 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전수학교 고등과정 및 일반과정에 있는분을 비롯하여 「취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취직에 대해서는 ,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의 학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 단 ,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대학 졸업 등의 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준에서 정한 실무경험 등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 재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34 페이지 ) >

## 2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정소 ) 를 이용합시다 .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정소 ) ( 이하 , 헬로워크라고 합니다 . ) 에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업상담 , 구인정보의 제공 , 취직 알선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주요 시정촌 ( 市町村 ) 에 584 개소 설치되어 있는 공공직업안정소 ( 분실 , 출장소 포함 ) 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떤 공공직업안정소에서도 전국의 구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인터넷상에서도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로 조건에 맞는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이하의 URL <https://www.hellowork.go.jp/> 참조 . 단 , 일본어만 )

여기에서는 직종 · 임금 등의 모집조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사업주의 요망에 따라 구인 사업주의 사업소명 , 주소지 ,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통역을 배치한 공공직업안정소 ( 36 페이지 참조 ) 가 있으므로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분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또한 , 유학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 43 페이지 참조 ) 가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

### 공공직업안정소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시간은 원칙으로서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15 분까지입니다 . ( 또한 , 평일에 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을 위하여 일부 공공직업안정소 등에서 평일 야간 및 토요일에 직업 상담 · 직업 소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통역을 배치한 「외국인 고용 서비스 코너」 가 있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도 항상 통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역자가 있는 요일 및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일본어가 가능한 가족 및 친구를 동반하시기를 권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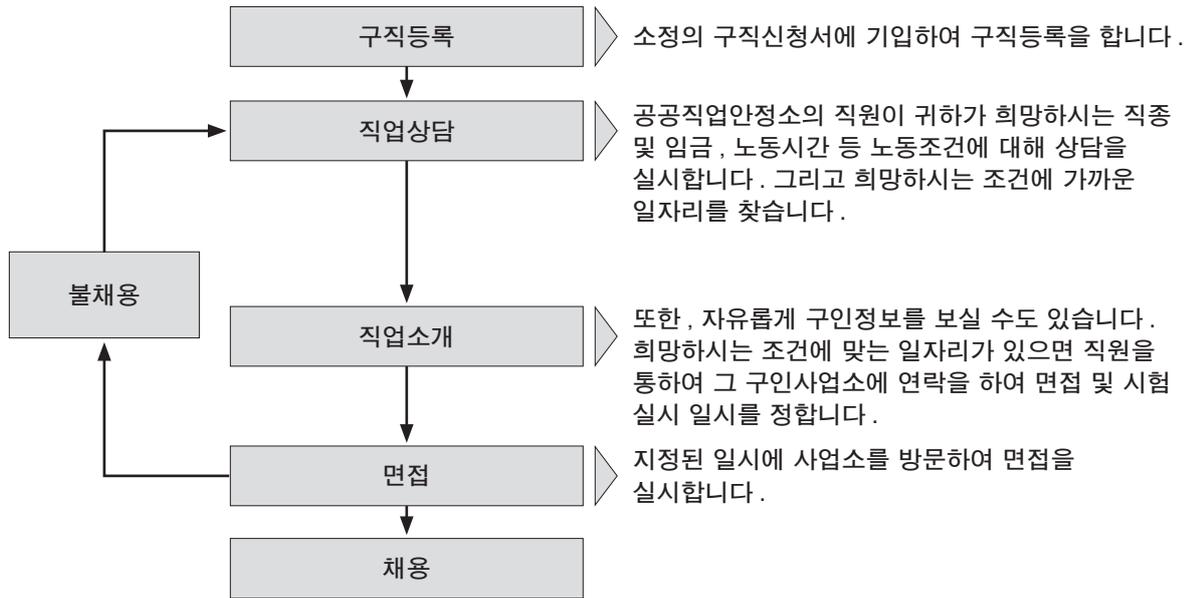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먼저 「접수창구」 에서 구직등록을 해 주십시오 . 구직등록은 소정의 「구직신청서」 에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 구직신청서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취업상담이나 직업소개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직원과 상담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구직신청서를 토대로 희망하는 직종이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 구직등록을 하면 「헬로워크 카드」 를 교부해 드리므로 다음 방문 이후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한번 「헬로워크 카드」 를 교부 받으면 전국 헬로워크에서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 헬로워크에서는 이 직업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능력 ( 자격 , 면허 , 경험 등 ) 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재취직 실현을 도와 드립니다 .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직원이 그 구인 사업소로 연락을 취하여 면접 · 시험 실시 일시를 정해 줍니다 . 단 , 이미 채용자가 정해져 있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 구직등록시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을 확인하게 되므로 「외국인등록증명서」 , 「여권 ( 패스포트 ) 」 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

사업소 방문 일시가 결정되면 「소개장」 을 전해드립니다 . 면접일시 및 장소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 또한 , 면접에는 소개장 이외에 지참해야할 필요한 서류 ( 이력서 등 ) 가 있으므로 공공직업안정소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

## 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구직순서



# 구인표 보는 방법

**고용기간**  
사전에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여기에 표시합니다.

**구인번호**  
모든 구인 정보는 이 번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의 할 때에는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취업장소**  
채용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게 될 장소입니다. 소재지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소개 기한일**  
채용자가 결정하며, 이 날짜 이전이라도 구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험·자격**  
사업주가 중시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시간·교대제**  
복수 패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와 이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求人票 (一般)

求人番号 61010-60341	受付開始日 17.12.8	募集締切日 18.2.28	募集分野 ソフトウェア業	募集職種 1: 3: 1: 2:	職工分類 3:	職工分組 061-10	事業所番号 6101-911049-0
事業所名 ハローシステム株式会社	職種 システム開発、設計	年齢 不問	採用人数 3人	事業所所在地 同	雇用形態 正社員	雇用期間 常雇	就業時間 ① 8時30分~18時30分 ② ③
所在地 〒123-4567 △△市○○区▲▲町1-0-7 電話 01-2345-6789 ホームページ http://www.oo.co.jp Eメール hello-aa@oo.co.jp	事業内容 コンピューターのアプリケーション開発の支援・運用管理をベースとした技術支援	必要な経験等 理工系大学卒業 経験者優遇	就業時間 60分	休日 日 土	週休日 毎週	就業時間 60分	就業時間 60分
創業 平成 4年	従業員 当事業所 32人	入居可能住宅 あり	月給制 円~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資本金 1600万円	うち女性 14人	車庫 あり	基本給 (月額給) 月平均標準日給 21,000円 150,000円~ 350,000円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加入保険等 雇用 労災 健康 厚生 特給	企業全体 374人	利用可能託児所 あり	毎月の就業時間 a 基本給 (月額給) 月平均標準日給 21,000円 150,000円~ 350,000円 b 手当 手当 円 手当 円 手当 円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退職金制度 なし	退職金 共有	育児休業取得実績 なし	c その他の手当等 手当 円 手当 円 手当 円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定年制 なし	再雇用 なし	育児休業取得実績 なし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勤務延長 なし	労働組合 なし	育児休業取得実績 なし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選考方法 面接 書類選考	就業場所までの地図 (本庁の駅・バス停からの距離) 〒000-0000 △△市○○区▲▲町1-0-7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選考日時 随時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発行部 履歴書 (写真貼付)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採用決定 2日後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担当者 田中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連絡先 ☎ 01-2345-6789	就業時間 毎月20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就業時間 毎月25日

**임금형태**  
주로 월급제, 일급제, 시간급제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베이스업·상여**  
전년도 실적에 의거하므로 반드시 채용된 경우에 보증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임금**  
a 란은 기본급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응모자의 경험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면접때 확인합니다. B 란은 반드시 지불되는 수당입니다. 그 외의 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불이 다른 수당으로 부양수당이나 성과금 등입니다. 통근수당은 면접때 확실히 확인합니다.

**휴일·주휴 2일제**  
휴일이 되는 요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일을 표시합니다. 주휴 2일제에서는 그 형태를 나타냅니다. 제도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합니다.

## 면접과 채용에 대하여

면접시에는 「이력서」를 대부분 필요로 합니다. 이력서는 구인자인 귀하를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읽기 쉽고 깨끗한 글자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 용지는 문방구에서 규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입은 검정이나 청색 펜 또는 볼펜을 사용해 주십시오.

면접시간에는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교통기관의 지연 등으로 약속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개장」에 명기된 채용담당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십시오. 또한, 면접을 사전에 취소하거나 그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개장」에 명기된 채용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담해 주십시오.

면접 결과 채용되거나, 채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되어도 당신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된 경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인표에 기입되어 있는 노동조건보다 낮은 조건이 제시될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에 응낙할 경우에는 노동조건을 구인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직업상담 등을 계속 도와 드리므로 다시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직업소개사업이나 노동자 파견사업 등을 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에는 노동자의 모집, 직업소개사업, 노동자 파견사업 등에 있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1) 노동자의 모집에 대하여

노동자의 모집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자신 또는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로 하여금 행하는 모집, 신문 등의 문서에 의한 모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이외에게 노동자에게 모집하도록 의뢰하는 위탁모집에 있어서는 취업안정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소개사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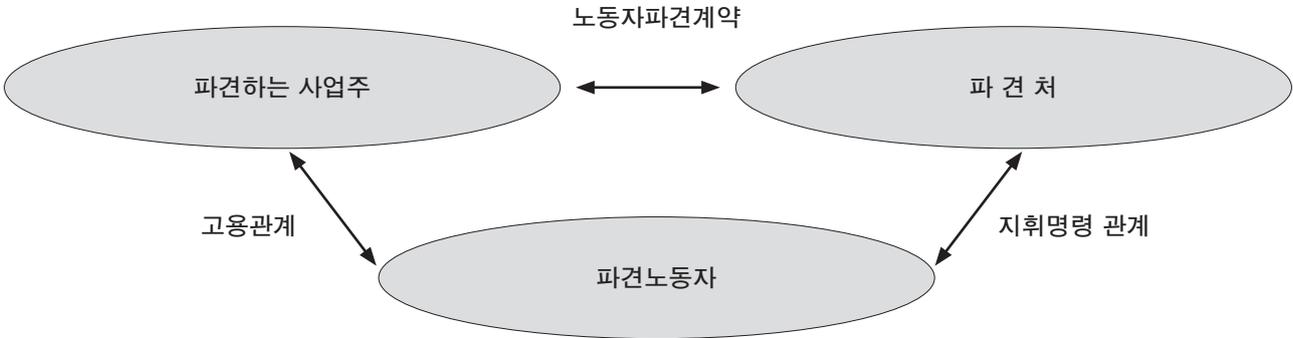
단, 항만운송 관련 직업 및 건설 관련 직업 등에 대해서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3) 노동자 공급사업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서는 아래에 기술하는 노동자파견 형태 이외에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기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제공하고,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동에 종사시키는 노동자 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 등이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무료 노동자 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 파견사업에 대하여

노동자파견법에서는 파견하는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파견처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그 파견처를 위하여 노동에 종사시키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나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에 있어서도 항만운송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 병원 등에서의 의료관계 업무 ( 당해 업무에 대해 소개예정파견을 할 경우, 당해 업무가 산전산후휴업, 육아휴업, 가정간호휴업을 취득한 노동자의 업무일 경우, 또한 의사의 업무로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노동자의 취업 장소가 벽지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2007년 9월 1일 현재) )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는 업무는 노동자 파견사업 적용 제외 업무이므로 이러한 업무로 노동자 파견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안정법이나 노동자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는 케이스로 인한 임금의 중간착취나 안이한 해고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불법 브로커가 적발됨에 의하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취업장 확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지 말고 공공직업안정소와 같은 공적인 취업경로 또는 적법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나 노동자 파견사업자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업주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노동자 파견사업의 허가 등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